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2. 18.(수),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백인성, 기근도, 박종민, 최종희,
신정일, 이정모, 정부희, 백운기,
김대관, 이상석, 정명섭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2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공개)
3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바다숲 조성	(공개)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공개)
5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숲」 내외 진입도로 정비	(공개)
6	「제천 옥순봉」 내외 생태탐방로(출렁다리 등) 조성	(공개)
7	제주지역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14건)	(공개)
8	의령지역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등 3건)	(공개)
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0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천진암 사찰음식교육관 신축	(공개)
11	「포천 화적연」 내외 탐방시설 정비	(공개)

【검토사항】

12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13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4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명부전 현상변경 관련 보고	(공개)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26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9-12-01

1.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08.10.24. 주요 수종별 우수 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 '09. 1.23.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보고
 - '17~'18년 우수(잠재)자원 발굴조사(***** *****)
 - '19. 3.25. 2019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9.10.15.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前문화재위원)
 - '19.10.23.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원안가결)
 - '19.11.1.~'19.12.1. 지정예고(관보공고-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聞慶 長水黃氏 宗宅 탕자나무)
Trifoliate Orange at the Head House of the Jangsu Hwang Clan, Mungyeong
* 경북도기념물 제135호('00.2.3.지정)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 지정가치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는 수고, 수관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

- 하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택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노거수로서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 문화재구역 : 2필지 4,073㎡(지정구역 1필지 2,823㎡, 보호구역 1필지 1,250㎡)
 - 관리단체 : 경상북도 문경시
 - 주요현황
 - 수 종 : 탕자나무
 - 수 령 : 400년 이상(추정)
 - 규 모 : 2주

수고(m)	흉고둘레(m)	수관폭(m)
6.3	0.96 / 2.6	동-서 9.2 / 남-북 10.3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는 수고, 수관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택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노거수로서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 탕자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총 2건)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78호	천연기념물 제79호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62.12.7. 지정)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62.12.7. 지정)
규 모	1주, 400년(추정), 나무높이 4.2m, 수관폭 동서 7.9m, 남북 8.3m	1주, 400년(추정), 나무높이 3.6m, 수관폭 동서 4.1m, 남북 7.0m
연혁 및 유 래	서해안에 탕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에 위치,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아래 심은 것에서 유래	

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2019.10.15.)

(1) 종별 및 명칭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聞慶 長水黃氏 宗宅 탕자나무)

Trifoliate Orange at the Head House of the Jangsu Hwang Clan, Mungyeong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문경시는 영남지방 북서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으로 경상북도 예천군, 남으로 상주시, 서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북으로는 제천시, 충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주요 수계로는 영강과 금천이 있음. 산북면은 문경시청 소재지에서

북동쪽에 위치하며, 운달산(1,097m), 단산(956m), 공덕산(913m) 등 임야가면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59번 국도가 금천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음.

- 대하리는 산북면사무소 소재지인 대상리의 북측에 위치하며, 대하리천이 중앙을 남동방향으로 통과하여 동남측의 금천과 만남.
- 대상지 서측에 산림지역이 있으며, 주변은 주거지가 대부분으로 남동측에 금천이 있음. 대상자원은 문경 장수황씨 종택의 안마당에 자리하고 있고, 배롱나무 등 조경수목과 함께 자람. 북동측으로 약 900m에는 마찬가지로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중 소유의 문경 대하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426호)가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장수황씨 종택은 문경지방에 있는 양반가옥 중 하나로 장수 황씨의 종가임. 조선 세종 때의 청빈한 관리로 유명한 황희 정승의 고손자 황시간(黃時幹, 1558~1642)선생이 살던 곳이라고 함. 탕자나무는 이 당시에 심은 것이라고 전해짐(박상진, 2011: 지정조사 의견 참조)
- 선비들이 특별히 탕자나무를 정원에다 심은 것은 중국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나라 재상 안영이 초나라의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안영의 기를 꺾기 위해 제나라의 도둑을 잡아놓고 ‘당신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모양이다’하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안영은 ‘굴나무는 회수 남쪽에 심으면 굴이 열리지만 회수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초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도둑이 됐을 것입니다’하고 응수 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고사임. <안자춘추(晏子春秋)>
- 탕자나무는 날카로운 가지 때문에 예로부터 성벽 주위에 심거나 울타리용으로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었음. 또한 탕자나무는 우리 역사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유용한 수종이어서 이미 강화도에 있는 두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음.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는 탕자나무로는 보기 드문 큰 나무로서 생장이 양호하고 수관이 웅장하고 수려하여 아름다운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탕자나무(강화도 갑곶리 탕자나무, 사기리 탕자나무)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탕자나무 소유자인 장수황씨 사정공파 문중에서 나무와 주변을 정성으로 돌보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자 하는 마음이 큼

- 탕자나무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로부터 성벽 주위에 심거나 울타리용으로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었음. 또한 우리 역사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유용한 수종이어서 민속적, 역사적 가치가 높음
- 근거기준 : 천연기념물 <식물> 마. 노거수(老巨樹)

(4)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지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1필지, 2,823㎡
- 문화재보호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1 1필지, 1,250㎡

(5) 보호관리사항 검토

- 문화재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경상북도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기존 행위기준을 따라도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활력저하현상이 나타나므로 전체적인 수목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보호책을 확장·설치할 필요가 있음

(6) 전문가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 탕자나무는 보통 외부에서의 진입을 통제하는 울타리용으로 심어져왔고, 열매는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되었으며, 민간에서는 탕자나무의 무섭게 돋은 가시를 활용하여 잡귀와 역귀를 막기도 하였음. 탕자나무의 독립수는 희귀하며, 특히 수령 400년 이상의 노거수는 더욱 희귀한 상황임.
- 이곳 탕자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도의 탕자나무 2그루와 수령은 비슷하나, 나무의 규모와 수형 면에서 이 두 그루의 탕자나무보다 훨씬 크고 수형도 아름답고, 생육환경 및 성장상태도 양호함.
- 태풍 등 재해에 의해 일부 가지가 절단되었고, 줄기 일부에 목재부후균(버섯)이 서식하고 있으나 원형과 생육지의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며, 이 탕자나무를 심은 시기와 수령의 추정치가 매우 확실함
- 이 탕자나무는 역사성, 경관성과 함께 민속적 및 학술적 가치를 두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육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탕자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 천연기념물 지정시에 명칭은 장수황씨 종택과의 연관성을 살려서 ‘문경 장수황씨 종택의 탕자나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 나무의 크기가 크고 수형이 수려하며, 고택 뜰에 있어 입지조건도 양호하며 수령 또한 높고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탕자나무는 두 그루 뿐이므로 희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지정된 탕자나무에 비하여 크기와 모양, 생육상태 에서 손색이 없음.
- 일부 가지가 소실되었음에도 전체적인 수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지정 후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의 관리이력과 옛 사진 등 자료 수집으로 나무의 생육상태와 활력 변화 확인
 - 여러 부분에서 활력저하가 보이므로 전체적인 정밀진단과 그에 따른 활력 유지조치 시행
 - 일부 주간의 부후균 제거, 말라죽고 있는 잔가지 제거 등 수관 정리
 - 지표면에 이끼가 많이 보이므로 토양 배수상태 확인(수관 바깥까지)
 - 보호책을 지금보다 확장하여(수관 끝선보다 2~3m 바깥으로) 재설치

<*** 前문화재위원>

- 기존에 지정된 2그루의 탕자나무와 달리 종택에서 관리해온 탕자나무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종택에서 수백년 동안 관리한 덕분에 원 생육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 황희 정승 가문에서 재배한 수목으로, 외부 방비용이라기보다는 약재를 얻기 위해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황희의 7대손 황시간 선생이 종택을 지을 당시에 심은 나무로 국내의 노거수 탕자나무 중 수세가 강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음.
- 문중 어른들의 전언에 따르면 마당을 평탄하게 정리할 때 생긴 흙으로 뿌리 주변에 30cm이상의 복토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서향의 굵은 줄기를 비롯하여 몇몇 가지들은 쇠약하거나 고사한 상태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 중국에서 전해진 탕자나무의 고사(남굴복지, 굴화위지)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내용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탕자나무가 자라는 황희 정승 가문의 종택과 류성룡의 학습 장소 등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7) 지자체(***) 의견(2019.3.4.)

- 장수황씨 종택을 지을 당시 심은 나무로, 기 지정된 탕자나무 못지 않게 수령이 오래되었으며 고유한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역사성과 수목의 수형 상 전국에서 보기 드문 예로서 천연기념물로 승격지정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2.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19. 1. 4. 2019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19. 4.23. 2019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알림 및 협조요청
(****→**** 등 7개시군)
 - '19. 7. 8.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요청
(***→****)
 - '19. 7.16. 2019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위원회 개최
(적정성 검토대상 선정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1건)
 - '19. 9.17.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9. 9.25.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검토
(조건부 가결-**** 조정안으로 시행)
 - '19.10.15.~11.13.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예고(관보공고-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번지
 - 지 정 일 : 1967.7.18.
- (3) 신청내용 :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 (신청) 2필지 652㎡ → (문화재청 조정) 3필지 662㎡(1필지, 10㎡추가)

(단위 : m²)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 면적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8	37,629	657	3	1,570	662	8	37,629	1,319

(4) 조정(확대지정)사유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보호구역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팝나무 주변으로 주택 등이 연접하여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천연기념물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하여 현재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조정(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봄.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현지조사 의견 / 2019.9.17.)

<*** 문화재위원>

-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503, 484번지의 일부가 신천리 이팝나무의 지정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구역의 절반 이상이 소계류와 마을 포장도로로서 생육 기반은 매우 협소한 상태임.
- 소계류의 복개공사를 하면서 절반 정도의 근권(根圈)이 훼손되었고, 가옥 쪽의 언덕부에 뿌리를 뺏어 성장하고 있는 상태로서 생육기반의 확장이 필요함. 또한, 마을주민들이 매년 이팝나무 꽃이 피는 5월 10일 경에 “이팝나무 장수축원제”를 지내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도로변에서 축원제를 지내고 있는 실정임.
- 보호구역 신청토지는 소유자가 매매를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매매 후 공장 등 (마을에 소규모 공장들이 산재하여 있음)을 축조하면 지형변형과 오폐수 유입에 의해 이팝나무의 생육에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해당 토지 가운데 지정구역만 지적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은 주변 토지에 공장축조에 의한 피해와 함께 토지 매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천리 503, 484번지 토지 전체의 매입이 불가피함. 2개 필지 토지 사이에는 946(도) 토지가 끼어있는데, 이 토지를 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매입한 토지에는 천연기념물의 후계목을 육성·식재하여 이팝나무 소공원을 조성하면 마을 경관 향상, 문화·생태 교육의 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보호구역 확장 건은 본 천연기념물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기념물 앞의 수로와 도로 건설로 root crown이 절반가량 소실되어 지금까지 양분과 수분 공급이 아주 불량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보호구역 657㎡에 652㎡를 추가하여 1,309㎡로 확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 현재 신천리 이팝나무는 600년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매우 협소하여 이로 인해 근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함.

바.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대상과 범위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비고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484	답	182	38	182	증 144㎡
		484-5	답	33	33	33	
		940	구	34,865	283	283	
		946-1	도	63	63	63	
		946	도	730	7	17	증 10㎡
		407	대	711	57	57	
		503	대	658	150	658	증 508㎡
		505	대	387	26	26	
계		8필지		37,629	657	1,319	증 662㎡

- 소유자 현황

지번	지목	지적 면적(m²)	편입 면적(m²)	소유자 주소	소유자
484	답	182	18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55, 102동 1405호	안병만
484-5	답	33	33	부원동 623번지	김해시
940	구	34,865	283		국(국토교통부)
946-1	도	63	63		국(문화재청)
946	도	730	17		국(국토교통부)
407	대	711	57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117 문 춘마을 1609동 1901 호	허영세
503	대	658	65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55, 102동 1405호	안병만
505	대	387	26	김해시 봉황동 459-2 광남백조맨션 2동 707호	김병을
계		37,629	1,319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3.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바다숲 조성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바다숲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바다숲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 지정일 : 1982.11.16.

(3) 신청내용

- 사업명 : 울릉·독도 해역 바다숲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서도 남측해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개 지구 150㎡(15×10m)
 - 설치위치 및 내용 : 수심 20m이하 적지에 인공어초 시설(트리톤) 투하 및 해조류 이식
 - * 인공어초 : 트리톤 해중립초 19기(A형 14기, T형 5기)
 - 규격 : A형(1.9×1.9×1.5) 5.5ton / T형(2.5×2.5×1.3) 4.5ton
 - 성분 : 제강슬래그 골재 80%, 고로슬래그시멘트 14%, 물 6%
 - 사후관리 : 성게 등 해적생물 구제, 해조류 보식 등 정기적 사후관리 및 생물상 등 모니터링 실시(10년간, 울릉군·포스코 민간스쿠버동호회)
 - * 1차 소규모 시설에 대한 바다숲 복원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시설 철거, 원상복구 후 문화재청 보고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결

-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의 재·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독도천연보호구역」 서도 남측해역에 인공어초를 투하, 해조류를 이식하여 바다숲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19.11.30.)

<*** 문화재전문위원>

- 독도해역에 바다숲 조성용 인공어초투하사업은 신중을 기해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몇가지 이유로 본 사업시행 반대의견을 제시함.
 - 인공어초 구조물은 자체 내구성의 한계와 강한 파도의 영향으로 수년이내에 파손되기 시작하며, 파손된 미수거 인공어초들이 동해연안에 다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설치 후 지자체에 이관된 후에는 지자체의 예산부족, 관심부족(수중이라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등의 이유. 독도해역은 동해연안 보다 해양 물리적 환경이 극심한 지역으로 파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동해안의 바다사막화(갯녹음 또는 백화현상)의 원인은 갈조류를 선호하는 초식자 성게의 고밀도현상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도 역시 현재 사업예정지 주변의 성게의 밀도를 고려할 때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임. 따라서 인공어초설치 후 성게밀도 조절 역시 지자체에 이관된다면 사후효과지속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과거 설치사례에서 거문도(자료공백 5년: 2014-2019년)는 독도와 해양환경이 크게 달라서 참고 비중이 약하며, 포항은 최근 5년 자료가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짐. 제시된 두가지 자료에서 우리나라 인공어초의 설치 후 사후관리 실정의 일면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B정점의 자갈로 이루어진 바닥(수심20m)은 광량부족, 기질(자갈)불안정, 침전물축적 등 바다숲을 위한 유용종(대형갈조류)의 서식환경과는 부합되지 않은 무절산호조류(백화상태의 우점종이자 성게의 비선호 먹이종)만이 최적인 서식처로 판단되며, 이 또한 자연서식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는 없음. 오히려 이전에 해조숲이었고 현재 성게과밀 등으로 인한 훼손된 지점의 복원이 더 시급한 과제로 사료됨.
 - 사업계획서 상에 서술된 “다양한 높이의 어초 설치로 해수유통의 정체역을 넓혀서 해조포자 착생을 증가 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임. 해수유통이 빠른 지점이 포자공급량이 많으며, 빠른 해수유통으로 인한 sediment washing 효과로 오히려 포자착생이 원활하며, 해조개체가입 이후 원활한 영양공급(해조엽체에 형성되는 얇은 수막층(boundary layer)은 유속과 반비례로 얇아지면서 수층의 영양공급률이 높아짐)으로 생장률 또한 증가됨.

- 독도가 갖는 지정학적, 생물지리학적 고유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인간개입 그리고 자연적 복원과 보존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치밀한 사전조사와 지식, 명확한 사후관리계획, 높은 성공률이 담보되지 않은 독도해역의 인공어초투하사업은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매우 신중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지자체(***) 의견(2019.11.14.)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기타 자료의 의견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독도수산연구센터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독도 해양환경변화의 영향으로 해조숲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복원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시, 설치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구체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업내용 및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참고자료(울릉군에서 제출한 관계기관 검토의견)

<*****>

- 갯녹음 발생해역에서의 인공어초 설치, 해조류 이식 등 바다숲 조성사업은 해양생태계 복원 방법 중의 하나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인공구조물의 적정 형태, 규모, 설치수량 산정
 - 인공구조물 설치 시 주변환경 및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평가
 - 인공구조물 설치 전·후 물리·생물·지질·화학적 모니터링 체계구축

<*****>

- 우리 공단에서 추진한 바다숲 조성사업 중 트리톤 A형, T형, 강제복합형을 포함한 트리톤 해중립초 설치해역은 2011년 울진, 2012년 삼척·포항, 2013년 포항, 2014년 영덕 총5개 해역에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조성년도 후 3년간 조식동물구제, 해조류보식, 폐기물수거, 모니터링 등 지속관리 실시함.
- 울릉·독도해역 해중립초 설치를 통해 해수 유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와류 정체역을 조성하여 포자 착생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최소 규모의 해중립초 설치를 통해 설치 전·후의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해당 효과 검정의 확인이 필요함.

<*****>

- 울릉도-독도간 설치된 기상청의 해상풍 및 파고 분포 자료에 따르면 독도 주변 해역은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서풍 혹은 북동풍의 바람과 함께 월평균

3m이상의 파고가 관측됨. 이러한 해상상태를 고려할 때 수중 해중립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독도 북쪽보다는 상대적으로 해상상태가 안정적인 독도 남쪽 연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고려됨.

- 독도 남쪽연안의 갯녹음화 진전도 및 양호한 해상상태를 고려할 때 독도 연안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해중립초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다만, 해중립초는 설치보다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중립초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및 해중립초의 설치 효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음.

사. 의결사항

- 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해양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명, 부결 9명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10차 문화재위원
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19.10.23.)에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 추진경과
 - '10.02.19.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 물류도시 개발계획 수립(*****)
 - '10.07.16.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12.12.14.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고시(*****)
 - '19.05.24.~06.14.(21일간) 허용기준 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공람(*****)
 - '19.07.0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조정
신청(*****→*****)
 - '19.10.23.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9년 10차) 심의 보류
* 보류사유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9.11.25.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 정 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단위 : m²)

구 분		당초(A)	변경(B)	조정(C)	증 (감)	
					B-A	C-A
제1구역	면적	1,460,433	1,544,076	1,600,791	83,643	140,358
	허용기준	개 별 심 의				
제2구역	면적	1,209,195	802,218	852,167	(감)406,977	(감)357,028
	허용기준	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				
제3구역	면적	18,201	좌 동		-	-
	허용기준	평지붕 17m이하, 경사지붕 21m이하				
제4구역	면적	2,625,001	2,773,056	2,697,536	148,055	72,535
	허용기준	평지붕 32m이하, 경사지붕 32m이하				
제5구역	면적	3,240,663	3,415,942	3,384,799	175,279	144,136
	허용기준	지 방 자 치 단 체 도 시 계 획 조 례				
합 계		8,553,493	8,553,493	8,553,493	-	-

라. 검토의견 (*****)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 물류도시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설정, 2012년 친수구역으로 결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이 일부 불일치하여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2019. 12. 6.>

- 이번 현상변경은 '19.11.25 현지조사를 통해 보낸 의견에 대한 서면 심사건으로 현장심사 이전의 계획보다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1구역이 14만m²가 늘어나고 2구역도 5만m²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 2구역이 현장 심사 이전에 비해 19만m²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음.
- 주요 조정내용으로 조정안 ②의 경우 수변공원내 먹이터 구간을 허용기준 1구역으로 강화 했고, 조정안 ⑥의 경우 수변공원 1구역 경계선은 녹지선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허용기준 1구역을 확대했고, 조정안 ⑦의 경우 수변공원 1구역 경계선은

녹지선과 일치하도록 조정했고 조정안 ⑨의 경우 수변공원 내 4구역의 4만1천㎡를 1구역으로 강화시킴. 또한 조정안 ⑩의 경우 수변공원 4구역의 11천㎡를 2구역으로 강화시켰고 추가 조정안으로 수변공원 내 4,5구역의 54㎡를 허용기준 2구역으로 강화 시키면서 1, 2구역의 면적을 확대시킴.

- 전체적으로 현장조사 이전에 비해 현실적인 철재들의 보호를 위한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생각되며 조정안 ⑥과 ⑦의 경우 허용기준 2구역이 허용기준 4구역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경 면적이 넓어 우려가 있으나 단독주택 동일 필지 내 일관성, 정합성을 고려하여 동일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고려하여 동일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현재 조정(안)의 시행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문화재위원 / 2019. 12. 5.>

- 당초 4구역과 5구역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확대 조정된 것은 이 지역의 철재 서식환경에 바람직한 변경(안)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일 성격의 용지와 동일 필지에 대한 허용기준 정합화로 인해 나타난 허용기준 구역 부조화의 저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2번과 6번 지역에서 확대 조정된 4구역의 서측부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2구역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위원 / 2019. 11. 25.>

- 공원 부지로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지역과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 강화는 철재도래지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정인 것으로 여겨지며, 동일 성격(주택)의 용지와 동일 필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단일화는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1구역에 연해 있는 2구역 지역의 4구역으로의 일률적인 완화는 1구역의 유지에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내재함
- 따라서 변경 내용 중 2,6,7,9,10번의 경우에는 확대변경된 4구역을 축소하여, 인접한 1구역과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2구역을 일정 부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3)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2019. 10. 11.)

- 사업부지 토지의 용도 변경(산업용지→공원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 강화는 철새도래지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정인 것으로 판단됨.

- 동일 성격(주택)의 용지와 동일 필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단일화는 대체로 합리적인 조정으로 여겨지나, 1구역에 연해 있는 2구역 지역의 4구역으로의 완화는 1구역의 보호에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내재함

(*** 문화재위원 / 2019. 10. 15.)

- 본 건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도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른 허용기준구역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이번 계획 건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1구역이 83,000㎡ 증가하는 것이 비해 2구역이 4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406,000㎡로 감소하고 있어, 실제 2구역을 4구역으로 조정할 때 1구역이나 5구역 변경하거나 그리고 2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前 문화재위원 / 2019. 10. 16.)

- 부산시에서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일부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용지변경, 도시내부 구역선의 도로기준 재조정, 조류 서식기능 강화를 위한 구역선 조정, 동일 필지내 2개 구역의 통합 등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여 허용기준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변경안이 낙동강에 도래 서식하는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⑥번 단독주택 지구의 구역 조정안(2,4구역→4구역)은 철새도래지 완충지역 기능 확보를 위해 3구역으로 재조정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3명, 조건부 가결 4명, 부결 1명, 보류 2명

5.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내외 진입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내외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내외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 지정일 : 1982.11.16.

(3) 신청내용

- 사업명 :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일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정비
 - 진입도로 정비 B=6.5m, L=262m
 - 교량 신규 설치 B=8.0m, L=21m
 - 성토최고높이 2.0m, 성토구간 L=95.8m
 - 수목이식 16주
 - 단풍나무(R7~R15) 11주, 느티나무(R10~R15) 2주, 향나무(R30) 1주
 - 은행나무(R40) 1주, 감나무(R10) 1주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내외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내외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신규로 교량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9.12.12.)

<*** 문화재위원>

- 예전에 이용하던 차량도로를 통제하고 현 인도로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차량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의 비포장도로 주변의 진입부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확장하여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백양사 진입도로는 보차의 필요성이 있어 신청도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안과 같이 도로를 성토 후 포장할 경우 진입부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도로에서 교행이 가능한 정도로 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 교량 또한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2) 지자체(***) 의견(2019.12.10.)

- 금번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기존의 관리 및 서비스 차량 진입로가 관람객과 같이 이용하는 비포장도로로 관리차량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백양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 진행 시 비자나무 숲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6. 「제천 옥순봉」 내외 생태탐방로(출렁다리 등) 조성

가. 제안사항

「제천 옥순봉」 내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천 옥순봉」 내외에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19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19.9.25.)에서 “경관분석 자료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48호 「제천 옥순봉」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산9 등

○ 지정일 : 2008.9.9.

(3) 신청내용

○ 사업명 :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산11-3 등(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전체 계획>

전체	문화재 구역	허용기준 1구역(=관련법)
거리 858m 폭 1.5~2.3m	· 출렁다리 76m (중점부) · 데크로드 164m · 돌계단 5m (1구역과 연결)	· 출렁다리 146m (시점부) · 데크로드 106m · 돌계단 39m, 야자매트 322m · 주차장 정비(아스콘, 잔디블럭)

<출렁다리 세부>

구분	내용
규격	· 형식 / 연장 : 무주탑 현수교 / 길이 222m, 폭 1.5m · 소 재 : 강재(앵커프레임, 거더), 케이블(록코일, 40mm X 8개) · 특 징 : 난간일체 3m블럭형, 바닥판 일부 그레이팅(내풍 성능)
관련 조사	· 탄성파굴절법탐사(교대2)(ABEM MARK 6 탐사기)/시추조사(교대1) · 구조안전계산(케이블, 바닥프레임, 앵커리지, 내진설계, 풍동시험) · 홍수대비 다리높이 : 100년 빈도 홍수 기준 2.0m높이 확보
하중 설계	· 보도 활하중 2.70kN/m² (70kg 성인 1,285명 통과기준) · 풍하중 : 기본풍속 30m/s(내륙기준), 설계풍속 28m/s · 내진설계 : 내진 I 등급(보도교 기준Ⅱ보다 상향적용)
유지 관리	· 점검주기 : 정기점검 6개월, 정밀점검 2년, 긴급점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완공 10년부터 5년마다 · 인력배치 : 4명(출렁다리 2, 주차장 2) · 기타 : 일몰~일출, 강풍·태풍 등 위험 시 출입제한, 안전표지판 설치

<경관분석 자료>

○ 조망점 선정기준 및 지정

구 분	조망점 선정기준	조망점 지정
중심개념	우수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 옥순봉 정상 전망대 • 청풍호 유람선 뱃길
	이용밀도 높은 지점	• 가은산 등산로 내 전망대
조망위치	내부 주요조망점 (8개 지점)	• 옥순봉 정상 전망대·전망바위
	주변 주요조망점 (14개 지점)	• 군도9호선(옥순대교) 주요 지점 • 청풍호 유람선 뱃길 • 가은산 등산로 내 정자
분석방법	사람의 눈높이(H=1.5m)에서 조망되는 경관분석	

<출처근거 : 명승 종합정비계획 업무편람(문화재청) p88에 근거하여 작성>

○ **경관분석 결과**

- 옥순봉 내부에서 옥순봉의 핵심절경(병진년 화첩)은 조망이 불가하며, 출렁다리 조망가능 지점은 정상 전망대 남서쪽 20m 지점⑦ (탐방로 밖)임
- 외부에서 옥순봉 절경을 보는 최적의 조망은 뱃길을 이용한 연속조망으로, 지점②에서 출렁다리가 조망은 되나 옥순봉 기암절벽과는 남서쪽 460m 지점이므로 출렁다리와 핵심절경은 동시 조망되지 않음.
- 멀리 가운산 등산로⑥에서는 옥순봉 절경과 출렁다리 일부가 동시 조망되나, 등산로 정자⑤와 옥순대교 시점⑦에서는 수목이나 지형의 차폐로 절경과 출렁다리가 동시에 조망되지 않음
- 출렁다리에서는 옥순봉 절경(병진년 화첩)이 산 너머에 위치하여 조망 불가함.

<그 외 안전 및 환경 관련 조사 내역>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결과
풍동실험 (‘19.6.~7.)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분모형실험 -공기력 측정 -3차원 플러터 해석	-플로터 발현기준 39m/s -41.6m/s까지 유해진동 미발생
시점부 지반조사 (‘18.11.)	(주)영진엔지니어링	-시추조사 (NX(Φ76mm)) -표준관입시험(SPT)	-BH-1:심도8.5m 풍화암 출현 -BH-2:심도4.5m 연암 출현
중점부 탄성파조사 (‘19.3.)	(주)나노테크이엔지	-탄성파굴절법 탐사	-0.4m~0.8m 심도 연암 출현
산림조사 (‘19.5.)	삼산임업기술(주)	-전수조사(98주) (2,000㎡ 미만)	문화재 구역 내 : 41주 문화재 구역 밖 : 57주 수종: 소나무, 굴참신갈나무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9.3.~9.)	(주)도명엔지니어링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예측·평가 -저감방안·대책수립 -관련기관협의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소음·진동,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원주환경청 협의완료)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허용기준 1구역 : 제천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천 옥순봉」 내외 출렁다리 설치 등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제출된 경관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0.29.)

- 명승 문화재인 옥순봉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 최고 절경인 기암절벽 부분에 대한 조망은 신설되는 출렁다리로 인해 저해되지는 않고 있으며, 출렁다리 위치가 옥순봉 정면이 아닌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음
- 다만, 청풍호 뱃길 이용 시 옥순대교 부근의 일부 지점과 가운산 등산로 일원 옥순봉 전망대에서 출렁다리 일부가 조망되고, 옥순봉 정상부 남서쪽에서 출렁다리가 조망되는 상황이라는 하나, 다리 위치가 옥순봉과 고도차가 있고 출렁다리의 세장비가 커 전체적인 경관 저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옥순봉 내에 설치하는 탐방로는 주변의 수목차폐로 외부에서는 조망되지 않고 있음
- 이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출렁다리 설치로 인해 명승 문화재 일부 경관이 저해되기는 하나, 다행히 옥순봉의 기암절벽 정면이 아닌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세장교로 자연친화적인 출렁다리 설치 등을 하면 옥순봉의 전체적인 경관을 크게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0.29.)

- 옥순봉은 비가 갠 후 희고 푸른 여러 개의 봉우리가 죽순 돋아나듯 솟아있다는 옥순(玉筍) 이름에서 보듯이 남한강 위로 보이는 기암괴석 등이 주요한 경관요소라 할 수 있겠음.
- 출렁다리가 설치되는 위치는 옥순봉의 서쪽 사면에서 충주호의 지류 건너편으로, 옥순봉의 주 경관인 북쪽 사면 기암괴석(병진년화첩)에서 수 백 미터 이격되고 방향이 달라 서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임.
- 출렁다리의 규모를 볼 때, 주탑이 없이 가로세로 1.5m 남짓으로 늘어뜨린 보도교가 옥순봉과 그 주변의 경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5.)

- 출렁다리는 구조안정성 검증이 확보되었지만 향후 안전에 따른 예방적 정기검사·출입통제 등의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난간 색채는 자연소재형으로 하고 숲 속 탐방로는 실시설계 시 토사유실, 낙석, 자연생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입회가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7.15.)

- 생태탐방로의 조성은 아래사항들을 고려하여 긍정적임.
 - 실시설계시 전문가의 입회하여 탐방로의 동물, 식물 등 중요한 보전가치가 있는 기존의 생태시스템 저해를 최소화
 - 낙석,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주변 주변요소의 조사를 통해 신중히 추진
 - 탐방로 주변의 ‘소리경관(soundscape)’를 녹취해 두어, 탐방로 조성이전과 이후 주기적으로 이를 녹취하고 점검하여 미시적이고 비 가시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권고
- 출렁다리의 건립에 관하여,
 - 수몰로 인해 단절된 두 마을간의 연결기능이 절실히보이지는 않음.
(단절된지 약 40년정도 경과된 것 등)
 - 그러나 주변의 구담봉등과 옥순봉으로의 연결성은 개선되어 이러한 측면에서는 집객력을 높이고 관광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철저한 구조적, 공학적 안전성을 토대로 건립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와 디자인을 권고함.
 -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자살방지 등 사건사고의 방지와 일몰 이후 시간등의 각별한 관찰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24시간 안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사적분과) 현지조사 의견 / 2019.5.9.)

- 출렁다리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물로서 풍동시험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옥순봉 지반조사(탄성파탐사) 결과 하부에 연암이 분포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육안관찰에서 절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되었음.
- 지반조사에 대한 재확인 및 이를 반영하여 영구앵커의 근입길이, 각도 등 설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렁다리는 구조체가 상시 움직이므로 케이블 및 중력식 기초, 영구앵커 설계 검토시 동적해석으로 접근하여야 함. 확인 필요.
- 안전을 위하여 활하중에 대한 검토 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의견 / 2019.4.12.)

- 문화재 지정구역과 1구역에 걸쳐 조성되며, 명승 방문객을 위한 사업으로 방문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보류 11명

7. 제주지역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14건)

가. 제안사항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제주지역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제주지역 천연기념물 14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9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567호(2019.1.28.)]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14건

- 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1964.1.31.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2002.2.2.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616 외
- 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1962.12.7.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1964.1.31.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2
- 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1964.1.31.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375-1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1964.1.31.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1993.8.19.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 15
- 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 납읍리 난대림」(1993.8.19.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57-1
- 천연기념물 제377호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1993.8.19.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
-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2001.9.11.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 외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1993.8.19.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1962.12.7.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
-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2005.1.6.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외
-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2004.5.14.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 외
- (3) 신청내용 : 제주지역 천연기념물 1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 제출안
 - <현행>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9-84호)에 따름
 - <신청안>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5-118호)에 따름
- 검토안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외) 허용기준에 따름
- (나) 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 제출안
- <현 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3:10이상) (1층7.5m/2층11m)
1구역	○ 해당없음	
2구역	○ 해당없음	
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검토안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체가 1구역으로 불필요한 공통사항 등 제외

구분	허용기준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다)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 제출안

<현 행>

구분	허용기준	
	건축물 공사	토지와 입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 원지형 보존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름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검토안 :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동일 높이로 제한, 불필요한 공통사항 제외

구분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구분	허용기준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라) 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 남읍리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7호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 제출안

<현 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3:10이상) (1층7.5m/2층11m)
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검토안 :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동일 높이로 제한, 불필요한 공통사항 제외

구분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제출안

<현 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처리 단) 20m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검토안 : 공통사항 적용범위 조정 및 주요사항 일부 추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처리 단) 20m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3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제주지역 천연기념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구역조정없이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실여건 및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의견 / 2019.11.27.)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5-118호)에 따름으로 수정하여야 함.
- 기 고시되어 운용중인 허용기준 내용 중 형평성 문제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통해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 가결 11명

8. 의령지역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등 3건)

가. 제안사항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등 의령지역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등 의령지역 천연기념물 3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9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567호 (2019.1.28.)]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1982.11.9.지정)
 -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3필지
-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2008.3.12.지정)
 -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번지
-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1988.4.30.지정)
 -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번지

(3) 신청내용 : 의령지역 천연기념물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 제출안

<현 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3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최고높이 12m	
3구역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 검토안 : 공통사항 적용범위 적용 및 불필요한 사항 제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나)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 제출안

<현 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공통 사항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	○최고높이 7.5m	
3구역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 검토안 : 공통사항 적용범위 적용 및 불필요한 사항 제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의령지역 천연기념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구역조정없이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실여건 및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 가결 11명

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금산길 42 외 2필지
 - 지 정 일 : 1982.11.9.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276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동 신축
 - 대지면적 660m²
 - 건축(연)면적 77.96m²(147.42m²) / 1층 74.96m², 2층 72.46m²
 - 건물최고높이 7.35m(지상2층),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9.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주변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지자체(***) 의견(2019.11.1.)

- 해당 사업예정부지는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위치해 있지만, 대안리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섰을 때 뒤편에 위치하여 느티나무의 전경을 가리는 위치는 아님
- 사업부지는 대안리 느티나무가 있는 위치에서 도로 건너편에 의하여 이격되어 있으므로 느티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자연문화재 경관 확보를 위한 단독주택 주변 차폐식재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 가결 11명

10.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천진암 사찰음식교육관 신축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천진암 사찰음식교육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천진암 사찰음식교육관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5-1
 - 지 정 일 : 2008.2.5.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백양사 천진암 사찰음식교육관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2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내용 : 사찰음식교육관 1동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299.08㎡
 - 교육관 105㎡, 사무실 17.82㎡, 로비 57.50㎡, 템플관 118.76㎡
 - 높이 : 건축물 최고높이 8.0m(지하 1층, 지상 2층)
 -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징크마감, 벽돌, 유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에 사찰음식교육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2.12.>**

- 사찰의 전방 진입부에 건립한다는 사찰음식체험관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전통조형미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형식으로 기존의 자연환경과 사찰의 진입부와 조망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2.12.>**

-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설계상의 건물은 외관과 내부가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어 명승지 경관과의 조화불일치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전통 방식의 건물로 하되, 건물 규모도 예정 부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2.12.>**

- 음식체험관은 현대식 2층 건물로 천진암 전면(명승 지정구역)에 건립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형태·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11. 「포천 화적연」 내외 탐방시설 정비

가. 제안사항

「포천 화적연」 내외 탐방시설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천 화적연」 내외 탐방시설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
 - 지정일 : 2013.1.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포천 화적연 내외 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66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전망데크(야외무대) 설치 1개소 180㎡
 - 주차장 설치 1개소 600㎡(대형1면, 소형26면)
 - 보행로 설치 1개소 (L=96m, B=1.8m)
 - 수목 이식 27주 등 조경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1.27.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포천 화적연」 내외에 화적연을 전망하는 데크와 탐방객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탐방시설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의견 / 2019.12.5.>

- 본 사업은 경기도의 한탄강 지질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작성된 ‘포천 한탄강 명승 문화재 종합정비계획(화적연, 명우리협곡)’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설계하였음.
- 사업내역은 포천 화적연 내 군 휴양소(6사단)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관람 시설 정비사업으로 화적연 전망대(야외 무대 겸용) 및 조정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편의시설로 주차장(대형 1면, 소형 26면)을 설치하는 사업임.
 - * 전망대(야외무대)는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적연 기우제 재현 행사시 활용
- 본 사업은 화적연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경기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군 휴양소 철거 부지를 활용해 관람 시설을 개선하고 화적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포천 화적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탐방시설 정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조건부 가결 11명

【검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12-12

12.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 (高敞 下古里 왕버들나무 숲)
Red Leaf Willow forest of Hago-ri, Gochang
* 전라북도기념물 제117호('02. 8. 2. 지정)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마을숲)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번지 외 7필지
- 지정가치
 - 고창 하고리 왕버들 숲은 99본의 군락지로 40cm이상의 왕버들이 59본으로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심어져 있고, 수세와 수형 또한 우수함. 마을을 수호하는 숲, 풍치가 아름다운 숲, 휴식공간의 숲, 하천을 보호하는 호안 숲 등으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닌 전통 마을 숲임
 -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비보림의 성격을 가진 마을숲으로 마을유래와 함께 왕버들나무에 나룻배를 묶어 부둣가로 활용하는 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높음
- 문화재지정구역 : 7필지 18,393.6㎡(문화재구역 15,404.6㎡, 보호구역 2,989㎡)
-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주요현황
 - 주요수종 : 왕버들(99주), 팽나무(30주), 버드나무(27주) 등
 - 평균수령 : 약200~300년(추정)
 - 평균규격 : 수고9.32m, 흉고직경 50.62cm

라. 검토의견(*****)

- 고창 하고리 왕버들 숲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왕버들 숲 및 왕버들과 비교했을 때 수령, 규모,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며 주변에 후계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어, 규모나 역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천연기념물로서 승격하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천연기념물 중 왕버들 지정현황(4건)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403호 성주 경산리 성박숲(1999. 4. 6. 지정)
규 모	59주, 300~500년(추정), 평균나무높이 12.7m, 평균흉고둘레 3.12m * 1호 왕버들(수고 12m, 흉고둘레 6.05m, 수관폭 25m)
연혁 및 유 래	성주읍성 서문 밖에 만들어진 숲으로 풍수지리설에 의한 비보임수다. 조선중기에 어린아이들이 이유없이 죽자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성박숲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성된 수해방비림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주민들의 이용을 전제로 조성된 마을숲으로서 전통도시의 마을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숲임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2012.10. 5. 지정)
규 모	3주, 430년(추정), 평균나무높이 10m, 평균흉고둘레 7.8m
연혁 및 유 래	1500년대 말경[430년 전(±10년)] 충효마을 앞에 숲을 조성할 당시에는 소나무 1그루와 매화나무 1그루, 그리고 왕버들 5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1松 1梅 5柳’라고 불렸으며 ‘마을의 상징 숲’이자 ‘비보(裨補) 숲’이기도 함. ‘1松 1梅 5柳’라고 불리는 이 숲은 광복이전에 매화와 왕버들 1그루는 말라 죽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소나무와 왕버들 1그루를 잘라버려 당시 소나무와 매화나무, 왕버들 2그루는 없어졌다. 현재 충효동의 명칭은 성촌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1788년(정조 12년) 정조대왕으로부터 충효리로 하사받은 호칭이기도 함.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193호 청송 관리 왕버들(1968. 3. 9. 지정)
규 모	1주, 380년(추정), 나무높이 10.2m, 흉고둘레 7.9m
연혁 및 유 래	청송 관리 왕버들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도문 노거수였음. 이 왕버들과 옆에 있는 소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애뜻한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음. 한 총각이 같은 마을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처녀의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갔음. 두 사람의 장래를 약속하는 증표로 이 왕버들을 심었음.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총각이 돌아오지 않자 처녀는 왕버들에 목을 매었는데 그 곁에서 튼실한 소나무 한그루가 자라났다고 함. 나

	중에는 이 두나무가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서낭나무로 되어, 매년 음력 1월 14일에 나무 아래서 마을 제사를 지내음. 특히 이 제사 때 사용한 종이를 글씨를 쓰면 명필이 된다는 말이 있어 제사가 끝나면 서로 다투어 종이를 가져갔다고 함.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제296호 김제 종덕리 왕버들(1982.11. 9. 지정)
규 모	1주, 300년(추정), 나무높이 12.6m, 흉고둘레 8.8m
연혁 및 유 래	마을사람들은 이 왕버들이 성덕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겨왔으며, 이 나무 가지 하나만 잘라내도 그 사람의 집안에 동티가 난다는 믿을 만큼 신성하게 모셔졌던 당산나무 임. 지역에서는 이 왕버들을 ‘도깨비버들’ 즉 ‘귀류(鬼柳)’라고도 불렀음.

※ 보호수 지정현황

(2019년 11월 현재)

수 종	지정	비 고
왕버들(<i>Salix chaenomeloides</i> Kimura)	172건	
버드나무(<i>Salix koreensis</i> Andersson)	106건	

마. 문화재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고창 하고리 왕버들 숲 (高敞 下古里 왕버들 숲)

Red Leaf Willow forest of Hago-ri, Gochang

(2) 역사문화환경

○ 인문환경

-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은 동쪽으로 장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성송면 암치마을에서 발원한 대산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으며, 하천 양옆으로 하천 뚝을 따라 수령 200~300년이 된 왕버들 등 12종 90여 그루의 숲이 마을 앞을 그림처럼 펼쳐져 있음
- 마을전설에 의하면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고자 하는 비보림의 성격을 가진 마을숲임
- 하고리 왕버들 숲 주변으로는 삼태마을과 더불어 정휴탁 고가(古家)와 태호정(颱湖亭) 등이 어우러져 있음

○ 자연환경

- 삼태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양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 토지 및 나

- 무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 일부 구간에 현재 왕버들이 후계목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숲 주변에 농경지가 인접해 있어 전체 왕버들의 뿌리 생육공간을 제한하고 있음



왕버들 숲 주변 농경지 현황



삼태천 양옆으로 조성된 왕버들 숲



왕버들 숲 주변 후계목 식재 현황

○ 마을전설

- 구전에 의하면 삼태마을의 형국은 부주(浮舟) 또는 행주(行舟)처럼 생겼다는 것임. 아주 옛날 대산천에는 배가 다녔다는데, 이 배가 삼태마을까지 들어와 정박하였음. 정박한 배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매들 요량으로 나무들을 심었다는 전설이 있음.
- 또한 이 마을에는 우물이 없는데도 착정(鑿井)하지 않았음. 이 마을이 바다로 저어나가는 배의 형국인데, 만약 착정하였을 경우 배가 가라앉아 마을의 운세가 다한다고 믿었기 때문임. 그리하여 우물을 파지 않고 흐르는 삼태천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함.

○ 숨은 이야기

- 삼태마을은 배의 형국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학의 형국이라고도 함. 진주정씨 정영원은 많은 부를 이루고 고택을 중건하고 마을 오른쪽 안산에 태호정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음. 그의 사후, 어느 도인이 그의 집을 지나며 이 집터는 학의 형국에 자리하였고, 학의 날개에 태호정을 세웠으니 학이 날아가지 못할 것이라 하였음.
- 그리하여 정씨 일가는 노포당 당집도 팔고, 그리고 당집 일부 건물과 태호정을 보천교 신도들에게 주었음. 그 신도들은 당집 일부 건물과 태호정을 해체, 가져다가 건물을 세웠다고 함.

○ 왕버들과 버드나무 이야기

- 마을 앞의 삼태천은 대산천(大山川)으로 흐르는데,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많았음. 그리하여 조상들은 그 독이 무너지지 않도록 삼태천 양 독에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왕버들 및 소나무, 뽕나무 등을 심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나무들이 배의 형국인 삼태를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었다고 함.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고창 하고리 왕버들 숲은 99본의 군락지로 40cm이상의 왕버들이 59본으로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심어져 있고, 수세와 수형 또한 우세함. 마을을 수호하는 숲, 풍치가 아름다운 숲, 휴식공간의 숲, 하천을 보호하는 호안 숲 등으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닌 전통 마을 숲임.
-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비보림의 성격을 가진 마을숲으로 마을유래와 함께 왕버들나무에 나룻배를 묶어 부둣가로 활용하는 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높음.
- 근거기준
 -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제2호 라목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1)

(4)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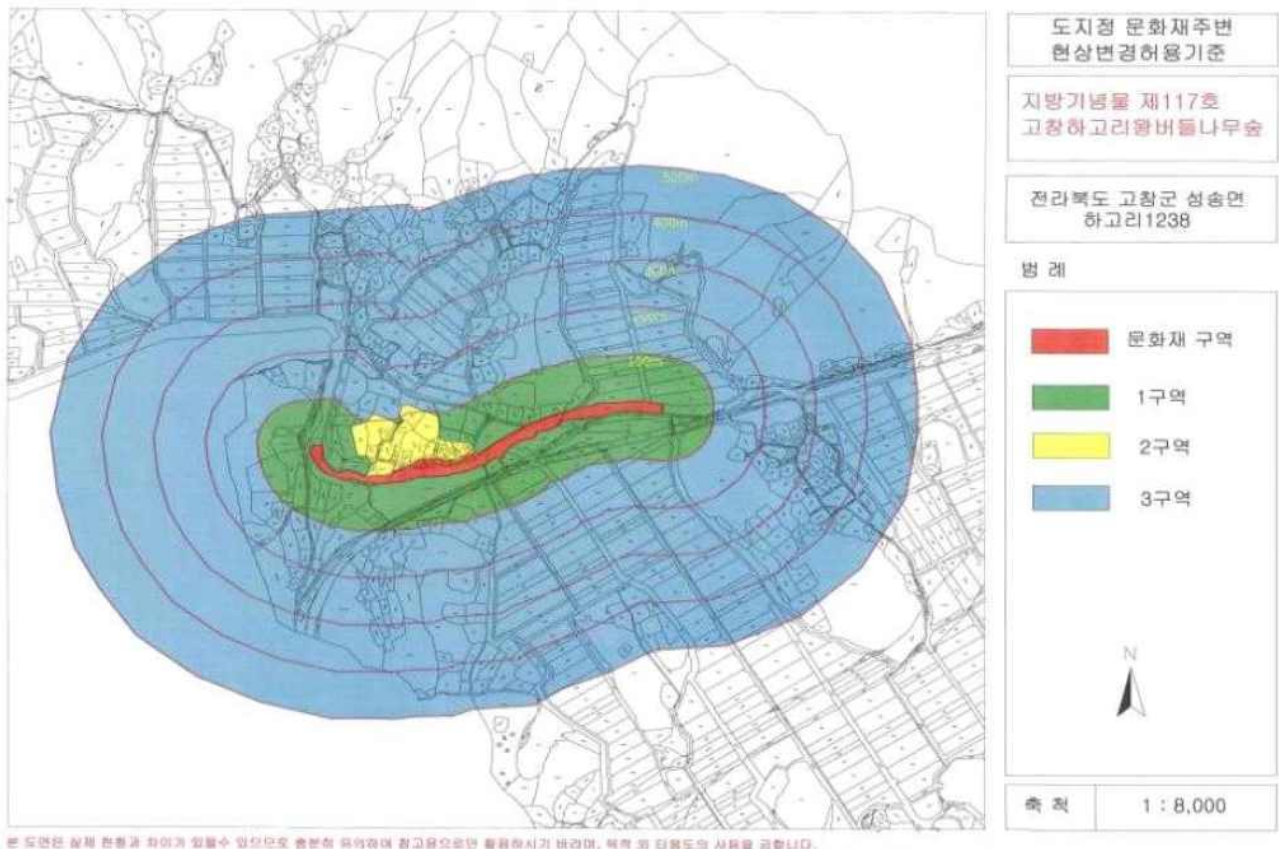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번지 외 7필지, 18,393.6㎡
- 문화재구역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지정면적(㎡)	비고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	천	국토교통부	7,014	4,423.4	
	761	천		16,620	10,717.2	
	762	도		7,700	1,872	
	471-3	답	전라북도	1,246	264	
	110-1	답	고창군	188	188	
	109-1	답		238	238	
	436-1	답		410	410	
	437-3	대		281	281	
합계				33,697	18,393.6	

(5) 보호관리사항 검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외곽 500m

구 분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	○ 최고높이 7.5m	
3구역	○ 고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존정비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숲 정비사업('09년), 보호사업('16년) 등의 관리가 진행되었지만 왕버들 숲 주변길의 잡초제거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 지역 주변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으며,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없는 현실과 불편함이 있음.

- 주변 경작지가 숲길을 침범해 좁아지고 있으며, 왕버들의 수관폭에 경작지의 토지가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 수목의 생육 환경과 환경 보전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함.
- 차후 왕버들 숲 인근 경작지의 일부분 토지매입 등을 통해 군락지 공간 확보, 생육저해 방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활용계획

- 왕버들 숲 주변에 있는 삼태봉을 잇는 산책로를 설치하고, 걷고 싶은 마을 숲길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마을숲길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
- 고창군은 2013년 5월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왕버들 숲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숲길, 마을공원 조성, 축제 등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계획임.

(6) 관리단체 의견

	명 칭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 *전북도기념물 제117호
	소 재 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번지 외 7필지
	소유구분	국유지, 공유지
	관 리 자	고창군
지정가치	빼어난 경관적 측면과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다양한 나무들에 대한 학술적 가치 및 마을유래에 담긴 나무숲과 함께 전해오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큼	
고창군 의견	-경관적으로 빼어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설을 통해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무숲을 조성한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일정 간격으로 식재된 다양한 나무들의 생물학적 가치가 뛰어남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에 대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로 승격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2019.11.20.)

<*** 문화재위원>

- 고창 하고리 왕버들숲은 수령 약 200~300여년으로 추정 및 추정되고, 왕버들(99주) 외에 25수중 221그루의 수목이 하천의 양쪽 독에 線的으로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음.
- 하고리 왕버들 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왕버들에 비해서 수령은 적은 측면이 있지만, 수령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의 경우 수령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됨.
- 하고리 왕버들숲은 문화성, 역사성, 기능성, 경관성, 생태성 등의 종합적인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왕버들은 전통마을의 하천가에 흔히 심던 수종이며 산림청 보호수 13,898그루 중 왕버들(버드나무 포함)이 580그루로서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에 이어서 5번째로 많음.
- 하고리 이외에도 하천가에 줄로 자라는 나이 수백년 된 왕버들 고목은 곳곳에 있음. 자람이 빠르므로 나무의 지름도 2~3m된 고목이 많음. 이에 비하여 이곳 왕버들은 가장 굵은 것이 지름 1m전후의 9그루로서 고목 왕버들 숲으로 보기는 아쉬움이 있음.
- 역사 문화 환경으로 배를 매었다는 전설과 조금 떨어진 거리의 남창 앞에 그려진 능수버들 그림이 있으나 천연기념물로의 승격의 필수 요건으로는 생각하지 않음.

<*** 문화재전문위원>

- 고창 하고리 왕버들 숲은 수령이 200-250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10주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생육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전라북도 기념물로서 그 가치가 뛰어남.
-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미흡하며 이를 뒷받침할 문헌적 근거가 미흡함.
- 19세기 전라도무장현도(全羅道茂長縣圖)에 나타난 2주의 버드나무류를 현재의

왕버들로 추정하기 어려우며 이외 대산천 주변에 왕버들이 식재된 원인과 인근 주민들과의 문화적 연관성 및 존치된 이유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문화재전문위원>

-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여타 수림지 또는 왕버들 군락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역사성과 경관성, 학술성 어느 면에서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함



고창 하고리 왕버들 숲 전경

사. 의결사항

- 부결
 - 역사적 가치 발굴 및 추가 검증 필요, 현행처럼 전라북도기념물로 보존관리함이 타당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부결 10명, 보류 1명

13.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가치 등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2019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검토('19.11.27.)에서 “지정명칭, 지정구역 확대여부 재검토”의 사유로 보류된 안전을 보완하여 재상정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
 - 한문 : 扶安 蓬萊谷 直沼瀑布 一圓
 - 영문 :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in Bongraegog, Buan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기준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 등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0
- 지정가치
 -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로, 폭포와 주변은 변산옹회암 지대와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이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보존가치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지켜지고 있음.
 - 직소폭포와 구곡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강세황의 우금암도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의 시·서·화가 남아있고, 관련 전설과 전승, 암각서 등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음
- 문화재구역 : 2필지 96,744m²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명칭 : 부안 직소폭포 일원
 - * 한문 : 扶安 直沼瀑布 一圓
 - * 영문 :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 부안군이 신청한 지정명칭인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의 경우, 구곡 전체를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봉래곡의 역사적 유래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 동국여지승람에 변산지역의 개괄적인 명칭·유래와 2곡(직소폭포)부터 5곡(봉래곡)에 관한 많은 문헌 이외에도 구곡 전체에 대한 명칭·위치·내용이 개략적으로 전하고 있음. 다만, 구곡의 명명자·경영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문자들이 남긴 특정 위치(직소폭포와 용소 중심)의 경관 위주로만 기록이 남아있어 구곡의 유래, 조성원리, 상세범위, 상세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려움.
- 현재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경관적 가치는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그 주변 경관들과의 조화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안 직소폭포 일원’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 5항 : 명승의 지정명칭 부여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문화재와 함께 주변 경승적 요소의 가치가 높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럿일 경우 ‘일원’으로 표기한다.

(2) 문화재 현황

○ 입지 및 지질현황

- 직소폭포가 위치하는 변산반도 일대의 거시적 지질구조는 화강암이 심층 풍화되어 형성된 동부의 구릉지 및 제4기 충적층 저지, 중앙의 거대한 백악기 안산암류인 화산암 복합체, 서쪽 해안에 발달한 경상계 퇴적암으로 분류됨.
- 그 가운데 봉래구곡은 중생대 백악기에 폭발하여 형성된 안산암류 화산암체에 위치한다. 부안일대 백악기 화산암체는 부안화산암에 해당하는데, 아래에서부터 천마산응회암, 연동응회암, 우동제응회암, 석포응회암, 격포

리층, 곰소유문암, 유정재응회암, 변산응회암, 삼예봉유문암으로 구분된다. 부안화산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변산응회암인데, 직소폭포 일원도 변산응회암지대에 위치함

- 폭포 주변에는 고온의 화산쇄설물이 정치된 후, 냉각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축소하여 형성된 다각형 기둥모양의 주상절리가 잘 발달하는데, 주상절리의 일부가 기계적 풍화작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주상절리 전석도 관찰됨.

○ 식생구성과 특징

- 직소폭포가 있는 선인봉 동사면 일대에는 낙엽활엽수와 수나무가 혼재하는 우리나라 중부의 전형적인 이차림이다. 주요 수종으로는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쇠물푸레, 당단풍, 팔배나무, 때죽나무, 서어나무, 굴피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 복자기,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산딸나무, 가막살나무, 소나무 등이 중층과 상층을 이룸
- 하층에는 생강나무, 개암나무, 검노린재, 고추나무, 광대사리, 털초록싸리, 괴불나무, 국수나무, 작살나무, 조릿대, 병꽃나무, 산초나무, 오갈피나무, 질달래, 참싸리, 철쭉꽃,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누리장나무 등이 분포함
- 계곡과 직소천의 주변은 천연기념물 제124호 「부안 중계리 팡팡나무 군락」, 제370호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등 보존가치 높은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음

○ 역사문화와 경관

- 산과 바다가 닿아 있는 부안의 변산은 『정감록(鄭鑑錄)』에서 제시한 경관이 아름다운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한 곳이며, 일찍부터 대한팔경(大韓八景)의 하나로 꼽혀왔음
- 예부터 “직소폭포와 중계계곡의 선경을 보지 않고는 변산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으며, 노령산맥을 등지고 호남평야를 가로 질러 서해로 돌출한 변산반도 중앙에 있는 내변산(內邊山)에는 직소폭포, 월명암, 실상사지 등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내소사와 적벽강 등이 펼쳐져 있음.
- 변산반도와 봉래구곡의 중심에 위치한 직소폭포는 채석강과 함께 변산을 대표하는 변산팔경 중에서 으뜸인 일경(一景)이다. 폭포 아래에는 실상용추(實相龍湫)라는 소(沼)가 있고 하류 쪽으로 분옥담, 선녀탕을 형성하고 있음
- 봉래구곡(蓬萊九曲)은 망포대·신선대(신선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백천과 합류하여 잠두마을의 암지에 이르는 약 20km의 직소천에 설정되어 있으나, 구곡시(九曲詩) 등이 전하지 않아 전체가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음

- 봉래구곡은 일반적인 오름식과 달리 상부에 1곡이 설정되고 하류로 내려 오면서 9곡이 설정된 내림식 구곡이다. 현재 6·7·8·9곡은 부안댐에 수몰되어 있음

구분	명칭	내용
제1곡	대소 (大沼, 大蘇, 구시뚝병)	대소폭포와 대소래사를 가리킴 (대소래사 : 소소래사와 함께 내소사의 유래가 된 사찰)
제2곡	직소폭포 (直沼瀑布)	폭포와 소(沼)로 구성되며 가뭄이 심할 때면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변산 최고의 승경으로, 시인 신석정(1907~1974)이 이 곳을 이매창(1573~1610), 유희경(1545~1636)과 함께 부안삼절(扶安三節)로 표현
제3곡	분옥담 (噴玉潭)	화산 분화구 모양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구슬같은 물이 떨어지는 못
제4곡	선녀탕 (仙女湯)	휘영청 밝은 달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고 간다는 못
제5곡	봉래곡 (蓬萊曲)	봉래산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이 구곡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봉래구곡’ 각자(刻字)가 있다. 동초 김석곤의 글로 알려짐.(양녕대군의 글자라고도 함) ○ 각자의 규격은 길이 5m, 너비 1.7m에 초서체 ○ 김석곤(1874~1948)은 정읍과 부안 등의 이름난 산에 초서와 예서로 많은 각자를 남긴 문인
제6곡	영지(影池)	월명암의 그림자가 비치는 못
제7곡	금강소 (金剛沼)	금으로 만든 비석을 빠트려 이름붙은 소(沼)
제8곡	백천(百川)	100 개의 봉우리에서 생겨난 100개의 개울이 모이는 곳
제9곡	암지(暗池)	잠두마을(누에가 머리를 든 형상) 앞의 못이다. 근처에 천연기념물 팽팡나무 군락지가 있으며, 지장봉, 쇠뿔봉, 비룡상천봉, 어수대, 우슬재로 이어지는 능선 시작점

○ 연혁·유래

- 『동국여지승람』에 변산(邊山)을 영주산(瀛洲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도교의 영향으로 봉래산(蓬萊山)이라 부르며 고창의 방장산(方丈山), 고부의 두승산(斗升山)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三神山)으로 꼽고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능가산(楞伽山)이라고도 함
- 많은 시객과 문객들이 유람처로 방문하여 직소폭포를 소재로 많은 글과 그림을 남으며, 특히 표암 강세황의 「우금암도」를 비롯하여, 동초 김석곤의 작품으로 알려진 봉래구곡 암각서, 김시습, 기준, 신경준, 이기 등의

- 작품이 잘 알려져 있음
- 가뭄이 심할 때 현감이 용소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구전과 용이 살았다하여 龍湫라고 불린 전설 등이 용추, 분옥담, 선녀탕 등에 잘 남아 있음
 - 관련 기록

내용	출처(작자, 책이름, 제목)
직소폭포 시	송병선 「연재집」 권21 邊山記 … 곧바로 직소에 닿았다. 바위 등허리가 움푹 패여 있고 커다란 바위가 가로 누워 있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깎아지른 듯했으며, 전체가 연못이었다. 위에 있는 소는 흘러 내리는 계곡물을 받아 벽을 뚫고 뿜어냈다. 그것을 헤아려보니 높이가 가시 수십 길이었으며, 그 소리는 우레가 울리는 것 같았다. 물거품을 날려 얇게 뿜어내어 옷과 두건을 적셨다. 아래의 소는 크기가 마치 네모난 못 같았는데, 검푸르고 깊었다. 따라온 자들이 모두 기이한 장관이라고 소리쳤다. 내가 홀로 말을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이 어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구룡폭포나 박연폭포와 비교해보니 하해와 구덩이물의 차이라 하겠다…” 강세황 「표암고」 권4 遊禹金巖記 이황 「퇴계선생문집」 별집 直淵瀑布 韻 白練橫飛翠障圍 흰 명주가 가로 날려 푸른 장벽을 둘렀고 劈開山骨減雲肥 산 바위 쪼개져 구름 살찌는 것 덜었구나 漲時河落深春地 넘칠 땐 은하수가 깊은 학으로 떨어진 듯 急處雷奔下激磯 빠른 곳은 번개같이 물가 돌을 내려치네 何許靈源連海窟 어디쯤에서 靈源이 바다 굴로 연했을까? 幾多餘沫散林霏 수두룩한 남은 거품 林으로 흩어진다 雄觀未遂鱸峯勝 웅장한 향로봉의 승경을 아직 구경 못했으나 且向茲山欲拂衣 또 이 산을 향해 옷소매를 털고 싶어라 (칠계 김언거(1503~1584) 선생이 보낸 시에 대해 같은 운자를 사용해 이황 선생이 답시로 지은 글로 추정)
직소폭포 그림	강세황 「우금암도」 龍湫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여지도」 부안현

내소사(來蘇寺), 소래사(蘇來寺) 기록에 폭포와 소 등을 묘사함	김시습 「매월당집」 권1 來蘇寺 기준 「덕양유고」 권1 來蘇寺 임방 「수춘집」 권4 與巡相韓公汝允 遊邊山. 次來蘇寺示同 遊諸公韻 차좌일 「사명자시집」 與扶安古阜二使君. 遊邊山來蘇寺 박윤묵 「존재집」 권4 來蘇寺 남병철 「규재유고」 권2 早發來蘇寺, 夜微雨 김진상 「퇴어당유고」 권3 曉向格浦
	신경준 「여암유고」 권4 卞山來蘇寺記 이기 「이해학유서」 권1 紀遊 강세황 「표암고」 권4 遊禹金巖記 송병선 「연재집」 권21 邊山記
	정지상 「동문선」 권12 題邊山蘇來寺 기준 「덕양유고」 권1 蘇來寺 김제민 「오봉집」 권1 題來蘇寺, 蘇來寺(夜雨聞鹿鳴, 題熙長 老壁上), 來蘇寺(見辛白麓效 鄭知常體. 因用, 其體, 以 贈 德熙長老) 박미 「분서집」 권5 遊邊山. 從蘇來寺下. 宿元曉菴 권시 「탄옹집」 권1 蘇來寺贈邊聖徵
	신경준 「여암유고」 권4 卞山來蘇寺記

(3) 지정 대상 및 범위

- 당초 전라북도는 직소보(1996년 건설, 4곡과 5곡 사이)를 고려하여, 직소 폭포를 중심으로 2~4곡만을 포함시키는 안으로 신청하였음.
-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5곡(봉래곡)의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며 직소보가 비록 현대적 시설물이지만 지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음.
- 1곡의 경우, 2곡(직소폭포)로부터 원거리(약 1.2km)에 위치하며, 1곡 그 자체와 1곡~2곡간 구간은 일부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 지정구역 검토

구분	1안	2안 (1안+1곡)																														
범위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u>대소</u> ,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특징	신청안에 더하여, 5곡 봉래곡(<u>하류의 암각자 포함</u>)	<u>1안에 더하여</u> 상류(남쪽) 1.2km 이격된 1곡 ‘대소’를 포함(1~5곡) * 1곡 위치: 구역도 하단(남쪽)																														
면적	3필지 240,730m ² (국유)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th>지목</th><th>지정면적(m²)</th></tr> </thead> <tbody> <tr> <td>산95-1</td><td>산</td><td>115,560</td></tr> <tr> <td>산95-10</td><td>산</td><td>84,700</td></tr> <tr> <td>산143</td><td>천</td><td>40,470</td></tr> </tbody> </table>	지번	지목	지정면적(m ²)	산95-1	산	115,560	산95-10	산	84,700	산143	천	40,470	5필지 282,512m ² (국유)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번</th><th>지목</th><th>지정면적(m²)</th></tr> </thead> <tbody> <tr> <td>산95-1</td><td>산</td><td>115,560</td></tr> <tr> <td>산95-10</td><td>산</td><td>105,200</td></tr> <tr> <td>산141-2</td><td>임</td><td>9,262</td></tr> <tr> <td>산141-6</td><td>임</td><td>12,020</td></tr> <tr> <td>산143</td><td>천</td><td>40,470</td></tr> </tbody> </table>	지번	지목	지정면적(m ²)	산95-1	산	115,560	산95-10	산	105,200	산141-2	임	9,262	산141-6	임	12,020	산143	천	40,470
지번	지목	지정면적(m ²)																														
산95-1	산	115,560																														
산95-10	산	84,700																														
산143	천	40,470																														
지번	지목	지정면적(m ²)																														
산95-1	산	115,560																														
산95-10	산	105,200																														
산141-2	임	9,262																														
산141-6	임	12,020																														
산143	천	40,470																														
구역도																																
위성도																																

마. 검토의견(*****)

- 직소폭포와 그 주변은 경관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주상절리 등 지질학 가치 및 보존가치 높은 식생의 서식 등 다양한 가치가 있는 바,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다.
- 직소폭포와 주변은 변산응회암지대와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이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보존가치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지켜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 직소폭포와 구곡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강세황의 우금암도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의 시·서·화가 남아있고, 관련 전설과 전승, 암각서 등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 근거기준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곳·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대(臺), 바위, 동굴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다만 명승으로서의 지정에 따른 가치의 확산, 향후 관리와 활용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명칭 및 지정 구역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1.11.)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직소폭포는 변산팔경의 하나로, 변산반도 내변산의 직소천 상류에 위치하며, 주요 역사문화환경 으로는 내소사, 실상사지, 월명암, 청련암, 낙조대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직소폭포와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의 경관요소를 포함하는 직소폭포 일원은 예로부터 문인(文人)들의 유람처로 명성이 높았으며, 직소폭포 일원을 소재로 한 시문(詩文)을 담은 문집으로는 송병선 『연재집』, 강세황 『표암고』, 신경준 『여암유고』 등이, 그림으로는 강세황의 「우

금암도」가 있음.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화산암봉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변의 침식지형과 주변 식생이 어울려서 경관이 수려하며,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봉래구곡(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을 경영·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곳으로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근거기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부안 직소폭포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원(지형, 지질, 식물, 경관, 역사적 사실 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직소폭포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변산응회암 지대에 위치하며, 주상절리와 주상절리의 풍화작용을 관찰,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직소천변의 침식지형과 주변 식생과 어울려서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직소폭포와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은 봉래구곡으로 불리우며,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환경적 가치가 뛰어남.

○ 경관

- 내변산의 주요 경관요소인 직소폭포는 신선대, 분초대, 망포대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옥녀봉, 덕성봉을 합하고, 남으로 선인봉, 쌍선봉 등으로 위요되어 흐르는 물줄기가 30m 암벽단애(岩壁斷崖)로 낙수하여 둥근 소(沼)를 이루고, 용추(龍湫), 분옥담(噴玉潭), 선녀탕(仙女湯), 봉래곡(蓬萊曲) 등으로 흘러가면서, 포트홀(Pot hole) 등의 하천환경을 형성하고, 주변의 기암절벽과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식생군락지와 어울려 빼어난 경관을 형성함.

○ 원형 보존성

- 직소폭포,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의 경관요소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직소폭포 일원은 주변의 산세와 기암절벽, 계류 등과 어울려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하며, 역사와 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景勝地)로서, 특히 폭포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타 명승과 차별됨.

○ 종합의견

- 부안 직소폭포 일원은 조선시대부터 변산팔경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화산 암봉 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변의 침식지형과 주변

- 식생과 어울려서 경관적 가치가 탁월하며,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봉래구곡(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 등)을 경영·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장소로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지정구역의 경우 직소폭포, 용추, 분옥담, 선녀탕, 봉래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월명암, 낙조대 일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1.11.)**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부안 봉래구곡은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흐르는 계곡 일대임.
 - 직소폭포
 - 직소폭포는 채석강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변산팔경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높이 약30m인 직소폭포는 봉래구곡 제2곡. 바로 아래 용추, 분옥담(제3곡), 선녀탕(제4곡) 등이 연결되어 있고 9곡의 주요 조망점을 형성함.
 - 나머지 봉래구곡(蓬萊九曲)
 - 망포대에서 발원한 직소천을 따라 직소폭포(2곡) 바로아래 분옥담(3곡), 그아래 선녀탕(4곡) 등이 연속하고 5곡-9곡은 댐 건설로 소가 호수를 이루고 수몰되어 있음(2019, 11.11 현장조사).
 - 봉래구곡을 따라 졸참나무, 굴피나무, 고추나무, 산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어우러진 산림경관이 관찰됨.
- 연혁·유래 및 특징
 - 변산을 대표하는 봉래계곡은 신선대 신선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망포대, 분초대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해발 약 150미터에 위치한 산곡의 분지마을 대소(大蕭)에서 만나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 등의 빼어난 경관을 연출하며 ‘봉래구곡(蓬萊九曲)’을 이루고 있음(부안군, 2019, p15).
 - 김시습 매월당집, 신경준의 여암유고, 송병선 연재집, 김제민 오봉집 등 수많은 조선시대의 시, 서, 화에 직소폭포가 주요 제재로 등장함(부안군, 2019, p16).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경관 및 소셜 네이처(social nature)로서의 현재가치
 - 폭포 주변은 고온의 변성 화산암에 형성된 주상절리가 발달, 육각 기둥형태로 발달한 형태가 뚜렷이 관찰됨.
 - 무엇보다 변산팔경이었던 직소폭포 일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탐승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던 최남선도 신춘순례(尋春巡禮, 1925)의 답사기를 통해 감탄해 마지않은 아름다운 절경지로서 수

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었음.

- 이러한 작품들은 현재에도 남아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과거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관념과 경탄을 공유하고 있는 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장소성, 심미성
 - 직소폭포 일대는 과거에 신성한 장소(holy place)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일제시대 부안군지(1932)에 보면, 직소(直沼)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고 전해지며 또 <한국지명총람>에는 “가물면 원님이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는데 물속에 산 돼지를 잡아넣는다”는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음.
 - 동초 김석곤의 ‘봉래구곡’ 암각서와 고병두의 필적인 소금강이란 암각자가 발견되어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많은 각서들이 분포하므로 정확한 연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정 대상 및 범위

- 직소폭포(2곡)~제4곡인 선녀탕까지가 부안군에서 신청한 명승 지정범위임.
- 5곡까지 확대 지정을 검토함이 타당함
 - 신청범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보고서(명승지정신청서, 자문의견서, <고서화고문헌에 나타난 명승자원발굴조사(2013)>) 등에서는 주로 ‘직소폭포’에 초점을 두어 조망적 경관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봉래구곡의 성격과 범위, 제5곡에서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경관의 아름다움, 진입로에서부터 관찰되는 유수와 수변, 오솔길, 식생, 지형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4계절을 반영하는 시각적, 심미적 경험을 고려할 때,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현재의 신청범위와 연계하여 확대 지정,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기존 변산국립공원 지정 범위 내에 위치하여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이외에 별다른 이슈는 현재 알 수 없음.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6, 7, 8, 9곡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명승 탐방로를 정비하면서 과거(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 의미 있는 옛길이 있었는지 파악하여 보고, 결과에 따라 향후에 보존, 활용방식에 대해 모색.

○ 문화재 가치

- 대상지(직소폭포 일원)는 비단 폭포만이 아니라 지형적, 역사지리적, 가치가 다양한 기록과 관련 연구성과물들에 의해 뚜렷이 확인됨. 무엇보다 육안으로 관찰되는 심미적 경관의 모습이 빼어나며 과거 사람들에게도 이 경관은 탁월하게 인식되어 탁월한 문화경관으로서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대상지의 자연 및 생태적 가치가 공식화 되어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생태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이에 헤리티지로서 문화, 역사적 가치를 복합화하여 보존책을 마련하고 후대에 전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경관

-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직소폭포와 봉래구곡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당대 최고의 문인과 화가 들이 이 곳의 아름다움을 각별히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긴 특별한 장소임.
- 따라서 현대인에게 그리고 미래에도 그 아름다움이 지속, 공유 가능한 ‘문화경관 및 소셜 네이처’로서의 장소성과 가치가 충분함.

○ 원형보존성

- 현장조사시 답사한 제2곡 직소폭포 제4곡 선녀탕은 큰 훼손없이 원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보의 건설로 인해 원형경관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되는 5곡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에 건조된 구조물이며, 이후 호소를 이루어 2차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는데 이 또한 주변과 어우러진 심미적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보 또한 기준이 수 경관에 추가된 당시의 인문경관으로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으므로(명승지에 세워진 과거의 교각과 누, 정 들이 오늘날에는 역사경관으로 파악됨과 같이), 명승의 지정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주변과의 연계성과 심미적 아름다움, 역사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차별성

- 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폭포들과 달리 ‘구곡’에 포함되는 직소폭포 일원은 점적 경관이 아닌, 선형 연계경관임.
- 또한 기존의 폭포들이 주로 지질/자연명승으로 접근된 것과 달리 다양한 식생경관과 함께 인문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특성이 복합된 경관으로서 큰 차별성을 지님.

○ 종합의견

- 지정가치에 관하여
 - 보편적으로 공유될만한 뛰어난 시각적 아름다움, 역사적인 장소성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록과 예술작품, 주변 식생환경의 우수성 및 지형적 특수성 등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확인됨.
- 명칭에 관하여
 - 이와 관련하여 그 명칭을 “부안 봉래구곡 직소폭포 일원”이라는 명칭은

‘폭포’보다 강조되어 기존의 지형경관을 연상케 하므로, 조정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함.

- 가령 “부안 직소폭포와 봉래구곡”은 ‘구곡’이 ‘폭포’와 대등하게 읽혀져 단일한 폭포경관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을 포괄하고 있음을 명칭으로 표현함.
- 지정범위에 관하여
 - 위에 언급하였듯이 신청지(2곡~4곡)와 연계된 주변으로(5곡 포함) 확대한 범위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화양구곡(명승제110호)을 제외하고 명승으로 지정된 구곡이 현재 없음).

(*** 전.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9.11.11.)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지형지질학적 가치
 - 직소폭포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변산응회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주상절리의 기계적 풍화작용뿐만 아니라 그루부, 포트홀 등을 관찰·학습할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또한,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질 안산암의 잔류지형으로 500m 이하의 화산암봉들 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이 만든 하천 침식경관이 매우 다채롭게 펼쳐진다.
- 조망경관적 가치
 - 30m 내외의 낙차를 가진 직소폭포는 봉래구곡의 제2곡으로, 하류에는 제3곡 분옥담, 제4곡 선녀탕이 밀착된 연계경관이다. 주변 계곡부에는 굴피나무·개서어나무·줄참나무·층층나무군락이 우점을 이루며 이외 굴참나무·산벚나무 그리고 합다리나무군집 등 7개 자연 식물군집으로 분류되는 등 자연성이 매우 높은 산림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 인문환경적 가치
 - 직소폭포 일대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연재집』에 실린 「변산기」 등 유산기(遊山記)에 소개되고 있듯이 조선시대 수많은 시객과 문객들의 유람처로 문학작품의 무대로 다수 언급되고 있다.
 - 미국 LA 카운티미술관 소장 표암 강세황의 화첩 ‘우금암도(禹金巖圖)’에는 직소폭포의 실경을 묘사한 용추(龍湫)가 전하고 있다. 또한 동초 김석곤의 ‘봉래구곡’ 암각서와 고병두의 필적인 소금강이란 암각자도 발견된다. 또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유서(儒袖)’라는 암각서도 존재하는데 이 암각서는 <전주이씨족보>에 전해지는 “실상사에서 효령대군이 잠시 기거했을 때 효령대군을 보러온 양령대군이 봉래곡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위에 새겼다”고 한 그것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 김시습, 기준, 신경준, 이기 등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1925년 육당 최남선

의 『신춘순례(尋春巡禮)』 등 당대 학자들의 문학작품에서 직소폭포 일원은 ‘실상용추(實相龍湫)’란 명칭으로 매우 생동적이고 감동적으로 회자되어 왔다.

- 1932년에 간행된 부안군지 『부풍승람(扶風勝覽)』에 의하면 직소(直沼)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고 전해진다. 또 『한국지명총람』 전라북도 부안군 편에는 “가물면 원님이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는데 물속에 산 돼지를 잡아 넣는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직소폭포 일대는 기우제를 지내는 성소(聖所)였음이 확인된다.

○ 지정대상 및 범위

- 현재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2·3·4곡을 명승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구곡의 성격과 5곡의 경관적 탁월성 그리고 주변 경관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다면 현존하는 1~5곡을 연계하여 지정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 보존영향 행위기준(안)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은 국립공원과 중복지정 되므로 해당사항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향후 관리주체의 역할분담과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제 문제에 대한 공조가 요망된다.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970년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직소보는 원칙적으로 파쇄하여 자연적인 수계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나 중계보로 인한 담수호 자체가 자연호수인양 역량성 있는 탐방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문화재 가치

- 직소폭포 일원은 자연경관이 탁월한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 자연식생학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직소폭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 1곡에서 2곡 직소폭포를 거쳐 4곡까지의 경관은 밀도 있게 연계되어 있어 ‘장(場)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점(點) 문화재로서의 속성도 함께하고 있다.
- 제5곡에 새겨진 동초 김석곤의 초서체 대자(大字)인 ‘蓬萊九曲’ 암각서는 그 크기나 서예적 기법에서도 주목 받기에 충분하다.

○ 경관

- 구곡경관의 일부로서 경관성과 연계경관으로서의 조망적 가치가 탁월할 뿐 아니라 계곡의 산림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직소폭포 그 자체는 초점경관으로서의 상대적 유목성이 매우 크다. 직소폭포 주변뿐만 아니라 그 아래 형성된 분옥담과 선녀탕 주변에는 폭호와 그루브, 포트홀 그리고 주상절리의 일부가 풍화되어 떨어진 전석이 흩어진 것도 매우 특이한 경관

이자 경관현상을 자아낸다.

○ 원형 보존성

- 제2곡 직소폭포에서 제5곡 봉래곡까지는 원형경관적 특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탐방을 통한 자연경관적 가치 외에 문화재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자연경관적 가치 외에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직소폭포가 가진 가치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명승의 보전 못지않게 활용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 차별성

- 대상지역은 복합산림문화유산 또는 지질관광자원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음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사계절 탐방객이 끊이지 않아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폭포를 포함한 구곡경관명승이란 측면과 부안군청 뒤편의 옛 감영터에 새겨진 봉래동천(蓬萊洞天) 암각서 등에서 표출되는 ‘蓬萊’ 즉 ‘신선경(神仙景)’으로서 부인 모티브를 견인할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 종합의견

- 직소폭포는 봉래구곡의 제2곡일뿐 아니라 변산팔경의 제1경으로 회자되는 변산의 제일경이라 할만하다. 직소폭포의 명승적 가치는 500m 이하의 화산암봉들 사이를 관통하는 직소천이 만든 하천 침식경관과 주변 자연식생이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의 시문과 그림 그리고 석각(石刻) 등에 의해 그 가치와 향유 문화가 전승되어 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용자관리에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 국내에서 명승 제110호인 화양구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명승으로 지정된 구곡이 없음을 볼 때 비록 하류의 구곡은 수몰되었지만, 직소천과 봉래계곡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 내변산의 대표적 승경으로서의 봉래구곡의 진면목을 국가가 인정해 준은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 판단된다.
- 이에 직소폭포 일원을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여, 부안군이 주도하여 문화재의 통합적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향유가치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 의견 / 2019.8.8.)

- 부안 봉래구곡 직소폭포 일원은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변산반도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변산팔경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직소폭포와 관련된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습니다.
- 직소폭포 일원의 자연유산으로는 직소폭포, 용추, 분옥담, 선녀탕 등이 있

습니다. 직소폭포는 변산반도의 내변산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로 높이가 약 30m에 이릅니다. 또한 직소폭포 직하에 있는沼는 용이 살고 있다하여 龍湫라 부르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분옥담은 직소폭포와 용추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고인 소이며,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녀탕은 분옥담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다시 고인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은 경관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직소폭포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변산응회암으로 구성되고 주변에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직소폭포는 고온의 화산쇄설물이 정지된 후, 이들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축소하여 형성된 다각형 기둥모양의 주상절리 형성작용에 대해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소폭포 주변의 주상절리 전석은 지표에 노출된 주상절리 내 절리면이 쉽게 풍화되고 침식되어 모암체가 파쇄되고 분리되는 기계적 풍화작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연경관과 지질경관이 뛰어난 직소폭포는 과거부터 많은 명사들이 찾아와 다양한 문학작품을 남기는 등 인문학적인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수많은 문학작품이 있지만, 특히 시·서·화 삼절로 불렸고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충수'로서 중추적인 구실을 했던 표암 강세황이 직소폭포에 들러 이곳 지역을 그린 「우금암도」와 동초 김석곤이 썼다고 전해지는 봉래구곡 암각서는 조선시대 직소폭포의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 이렇듯 직소폭포 일원의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 인문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 참고사항

(1) 조사용역 보고서 관계전문가 의견

(****-****-**** 위원 / 2013.9.27. 자원조사 용역)

- 직소폭포는 변산팔경의 하나로 내변산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30m의 폭포이며, 직소천의 계곡을 따라 명명된 봉래구곡의 하나에 속하기도 하는 경승지이다. 폭포 아래에는 용이 살았다고 하는 깊은 푸른 용소가 위치하고 있다.
- 직소폭포는 내소사의 북서쪽, 선인봉의 동쪽 산자락에 형성된 계류폭포이

다. 폭포는 높이 20m 이상을 비류하여 옥수담에 떨어지는데 그 밑에 제2, 제3의 폭포가 있다.

- 1770년경 강세황이 이곳 지역을 그린 우금암도가 전해지고 있다.
- 현지인들은 직소폭포와 그 일대를 내변산의 제일 경승으로 치기도 하고 변산팔경의 하나로도 꼽는다. 직소폭포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흐르는 계곡 일대를 봉래구곡(蓬萊九谷)이라 한다.
- 변산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의 진정성에 입각하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직소폭포 일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게 하려면 국가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지정구역: 1안(3필지 240,730㎡)
 - 지정명칭: 부안 직소폭포 일원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조건부 가결 11명

【보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12-14

14.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명부전 현상변경 관련 보고

가. 보고사항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백양사 명부전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 내 백양사 경내에 소재한 명부전 건물의 현상변경된 사항을 보고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시 행 자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5-1
- 지 정 일 : 2008.2.5.

(3) 현상변경된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9 (문화재구역 내)
 - * 명승 지정구역의 남쪽 끝부분(지정구역도 참조)
- 명부전 개요
 - 목조기와, 연면적 282.64㎡(지하 197.14㎡, 지상85.5㎡)
- 허가신청 없이 변경된 내용
 - 전면부 출입문 전체를 전통창호에서 유리창호로 변경
 - 기단 위에 현대식 기단 올림, 뒤편 지하출입구 소재 유리로 변경
- 주요경과
 - '97.11월 건축물 사용승인 ('99.10월 장사시설 허가)
 - '04.9월 지하 영각당에 납골당 1,000기 설치 (지상은 명부전)
 - '18.8월 지상부 외부마감 변경(내부 납골당 432기 설치)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장사시설 설치금지(법17조)

- 위반시설의 처분·이전·취소·폐쇄·금지·정지(법31조)
- 위반시설의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 처분(법35조)
- 금지구역 내 설치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39조)
- 금지구역 내 설치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법43조)

라. 검토의견 (*****)

- 명부전은 명승의 주요경관인 백학봉의 반대쪽 백양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전면부와 기단 등을 현대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옆면·후면과 기와·목구조 등은 변경되지 않음.
- 장성 백양사 백학봉은 암벽과 식생을 바라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명승으로, 백양사 명부전의 현상변경이 명승의 경관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대관<2009년> -장성 백양사 백학봉 부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도계를 이루고 있는 백암산의 능선이 흘러와 백학봉을 이루고 있다. 장성 백양사 백학봉은 장성군 백암산 아래에 위치한 백양사와 백학봉 일대로,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백양사 대웅전과 쌍계루는 백학봉의 아름다운 자태를 조망하는 조망지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백학봉의 암벽 및 식생경관은 매우 아름다워 예로부터 대한 8경의 하나로 꼽혀왔을 만큼 이름난 곳이다. 백양사가 위치한 백암산은 내장산과 함께 단풍이 특히 유명하며, 천연기념물 제153호인 백양사 비자나무 분포 북한지대를 비롯하여 백양사 고불매와 함께 1,500여 종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자원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백양사는 백양사 창건 역사를 전하는 삼봉 정도전의 「정토사교류기」를 비롯하여 묵은 이색·포은 정몽주·하서 김인후·사암 박순·면앙정 송순 등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까지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곳을 탐방하여 백학봉과 쌍계루의 풍광을 읊은 시와 기문을 남기는 등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명승지이다. 특히 백양사 대웅전 기와지붕과 어우러지는 백학봉과 쌍계루 앞 연못에 비치는 쌍계루와 백학봉의 자태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다.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접수 11명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26건)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6건)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2차) - 사업위치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람생태학습장 ~ 다대동 노을정휴게소 간(문화재 구역 및 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해안산책로 설치(B=2.0m, L=358m) ○ 허가기간 : 2020.4.1.~2020.10.31.	<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 사업위치 : 낙동강 하구 해안가, 항·포구 및 도서지역(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태풍 피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1,100여톤 수거·처리(폐목, 폐어구, 폐어망, 폐합성수지 및 페스티로폼 등) ○ 허가기간 : 2019.12.12.~2020.03.31. ○ 허가조건 · 소음과 이동시 발생하는 교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이벽을 설치하여 수거하시기 바람. · 수거작업은 주 월동지인 갯벌(명금머리와 백합등 사이)이 드러나는 곳은 제외하고, 사주가장자리와 도요등 인근 위주로 실시하시기 바람. · 수거 작업 시 작업복과 도구 등은 원색은 피하고 주변색과 비슷한(갈색) 색으로 착용하시기 바람.	<조건부 허가>
	3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10-2 (허용기준 1, 2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747㎡, 건축면적(연면적) 229㎡ (지상1층 165㎡, 지상2층 64㎡)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건물전면폭 17.5m(데크 2.5m포함), 건물옆면폭 15.5m(데크 2.5m포함), 높이 10.4m · 일반철골구조, 진입도로 27m신설(폭 4m) ○ 허가기간 : 2020.2.1.~2020.10.31. ○ 허가조건 - 건물의 외관은 갈색 및 회색계열로 하고, 대형 유리창으로 인한 조류의 충돌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람. - 겨울철새 도래기간인 11월~익년3월은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	
	4	동물	천연기념물 제335호 통영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도서생태계 영향 파악을 위한 연구장비 설치 - 사업목적 : 국립공원 도서생태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영향 모니터링 - 사업위치 :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내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미기상관측시스템 및 생물계절관찰시스템 설치 ○ 허가기간 : 2019.12.4.~2019.12.31.	<허가>
	5	동물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창고시설 증축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61-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창고증축 15.6㎡ · 대지면적 285㎡ · 건축면적(연면적) 기존(61.42㎡)+증축(156㎡) = 77.02㎡ ○ 허가기간 : 2019.12.4.~2020.2.29.	<허가>
	6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6-3, 116-4(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1, 2동), 단독주택 3동 · 신청면적 1,796㎡, 건축면적 333.02㎡, 연면적 329.82㎡(1동 79.04㎡, 2동 79.04㎡, 3동 171.74㎡) · 건물 높이 : 1~2동 지상1층(5.3m), 3동 지상1층(4.7m) · 건물 구조 : 1~2동 일반목조구조, 3동 철근콘크리트구조 · 우수처리시설 12.0㎡(1개소) ○ 허가기간 : 2019.12.4.~2020.11.30. ○ 허가조건 -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옹벽과 건축물이 차폐되도록 식재하고, 해안으로의 접근로를 차단하시기 바람. -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건축 후 생활하수와 우수 유입에 의한 갯벌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건축물색상 및 유리창 충돌방지계획, 조정계획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등 강화군 문화재부서의 설계승인을 받고 시행 하시기 바람.	
	7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도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 사업위치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1006. 1009~1013, 1018-1번지(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6,951m ² ○ 허가기간 : 2019.12.12.~2020.12.31.	<허가>
	8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예찰사업 - 개체수 : 30개체 - 사업위치 : 정읍시수계일원 - 사업내용 : 원앙포획 및 시료채취 ○ 허가기간 : 2019.11.27. ~ 2020.3.31.	<허가>
	9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예찰사업 - 개체수 : 30개체 - 사업위치 : 아산시 곡교천 일원 - 사업내용 : 원앙포획 및 시료채취 ○ 허가기간 : 2019.11.26. ~ 2020.3.31.	<허가>
	10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예찰사업 - 개체수 : 30개체 - 사업위치 : 천안시 봉강천, 풍세천 일원 - 사업내용 : 원앙포획 및 시료채취 ○ 허가기간 : 2019.11.26. ~ 2020.3.31.	<허가>
	11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예찰사업 - 개체수 : 30개체 - 사업위치 : 익산시 만경강 일원 - 사업내용 : 원앙포획 및 시료채취 ○ 허가기간 : 2019.11.26. ~ 2020.3.31.	<허가>
	12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예찰사업 - 개체수 : 30개체 - 사업위치 : 완주군 만경강 일원 - 사업내용 : 원앙포획 및 시료채취 ○ 허가기간 : 2019.11.26. ~ 2020.3.31.	<허가>
	13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예찰사업 - 개체수 : 20개체 - 사업위치 : 함평군 고막원천, 영산강 지류 - 사업내용 : 원앙포획 및 시료채취 ○ 허가기간 : 2019.11.26. ~ 2020.3.3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4	지질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및 퇴적층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상수관로 매설 및 물탱크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8번지 2호(지정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상수관로 매설 및 물탱크 설치 · 면적 : 869m² · 규모 - 상수관로 : 6.44km(D100~D50mm), 1.4km(D16mm) - 물탱크(1개소) : 지름 3,300mm, 바닥면적 4600*4,900mm, 높이 3m ○ 허가기간 : 2019-12-12 부터 2020-6-30 ○ 허가조건 - 추도 물탱크 시설은 수목식재를 통한 차폐 실시하고 물탱크로 연결되는 돌계단 길 매설 작업은 돌계단의 기존 판석이 최대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실시 할 것	<조건부 허가>
	15	식물	천연기념물 제317호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내외 하수관로 매설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 52 (문화재구역 내외) - 허가내용 · 하수관로 227m 매설: D=200mm, L=127m / D=150mm, L=37m / D=100mm, L=63m ○ 허가기간 : 2019.12.9. ~ 2021.12.31.	<허가>
	16	식물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토요무대 막구조물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76번지일원(허용기준 1구역) - 허가내용 : 토요무대막구조물 설치 · PTFE 막구조물 설치(L=14m, B=11m, H=6.7m) ○ 허가기간 : 2019.12.09. ~ 2019.12.31.	<허가>
	17	식물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함양 상림 주변 진입도로 정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1번지 일원(허용기준 1구역, 3구역)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내용 : 함양 상림 주변 진입도로 정비 · 정비 : B=11.2m(도로폭 6.5m, 인도폭 2.35m*2), L=273m · 포 장 : 아스콘포장 1,863㎡, 블록포장 1,292㎡ ○ 허가기간 : 2019.12.09. ~ 2020.12.31.	
	18	명승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 신청인 : *** (****) ○ 허가사항 : 부산서원 조명 - 사업위치 :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산3-3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조명기구 26개, 투광조명 8개, 라인바 18개 ○ 허가기간 : 2019.12.11. ~ 2020.12.10. ○ 허가조건 : 보안등주(2개소)는 제외한 일부허가	<조건부 허가>
	19	명승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청량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64(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등산로 정비 970m, 안전난간 253경간 ○ 허가기간 : 2019.12.11. ~ 2020.12.10. ○ 허가조건 : 전망테크(7.5m) 설치는 제외한 일부허가	<조건부 허가>
	20	명승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청량산 도립공원 김생폭포 정비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64(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계곡에서 취수·이송한 물을 폭포에 방출 ○ 불허사유 : 폭포경관 훼손, 인공시설로 지형훼손 등	<불허>
허가사항 변경 허가	21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축소(144,400㎡→64,710㎡), 주소변경, 허가기간 연장 · 대지면적 64,710㎡, 건축면적 5,873㎡, 전체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연면적 10,714㎡, 건폐율 4.16%, 용적률 7.03%, 건물동수 2동, 최고높이 14.2m(지상 3층) · 건축개요 : 운영센터(3층, 연면적 5,807.80㎡), 청소년생활관(3층, 연면적 3,513.63㎡), 지도자실(3층, 연면적 1,184.220㎡), 재활용/오수처리장 203.42㎡, 경비실 5.51㎡ ○ 허가기간 - (당초) : 2017.7.27~2019.12.31 - (변경) : 2017.7.27~2022.10.31 ○ 허가조건 - 시설 건립계획 2안(생태체험관을 운영센터에 포함하는 안)으로 시행 - 차폐 식재 계획 설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설계 및 건립공사 추진 시 세부사항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공사 중 생태 모니터링 실시 - 낙동강 하구의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겨울철 철새 도래기간(11월~2월)은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	
	22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촬영장치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97-1 도요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높이 3m, 밑면 2m), 태양전지판 3개, 실시간 동영상촬영장치(높이 3m) 1개 설치 ○ 허가기간 - (당초) : 2017.8.1.~2019.12.31. - (변경) : 2017.8.1.~2021.12.31.	<허가>
	23	동물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생태복원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남애리, 전포매리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복원습지 조성(94,599㎡), 갈대·논 습지 조성(27,167㎡), 습지공원지구(49,967㎡), 기존 보 철거, 연결목교(L=50m, B=2.5m) 등 ○ 허가기간 - (당초) : 2018.4.2.~2019.12.31. - (변경) : 2018.4.2.~2020.12.31. ○ 허가조건 : 자연학습장 식물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고유수종으로 변경 할 것.	<허가>
	24	식물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 신청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 대평늪 탐방로 확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번지(문화재 구역 내외) - 변경허가내용 : 기간연장 · 당초: 2018.11.27.~2019.11.26.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변경: 2018.11.27.~2020. 6.30. ○ 허가기간 : 2018.11.27. ~ 2020.6.30.	
	25	식물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교량설치 등 도로개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 일원(문화재 구역 내외) - 사업내용 : 교량설치 등 도로개설 (당초) · 도로개설 : 연장 : 2.3km, 폭 15.5~25.5m (양방향 2~4차로) · 교량설치 : Beam교량(길이 55m, 폭 27.9m, 시공방식 PSC거더교) · 면적 : 4,868㎡ (변경) · 도로개설 : 연장 : 2.3km, 폭 15.5~25.5m (양방향 2~4차로) · 교량설치 : Beam교량(길이 55m, 폭 27.9m, 시공방식 PSC거더교) · 면적 : 4,868㎡ · 녹나무 1주 이식 ○ 허가조건 1) 녹나무 이식 모든 과정에 관계전문가를 입회하여 시행할 것 가) 이식목(녹나무) 분경은 근원직경의 5배를, 분고는 분경의 100% 기준으로 하고, 세근 유도를 위해 60cm의 여유를 줄 것 나) 수목 전정은 15% 내외로 하되, 녹나무 당초 수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다) 되메우기의 경우 원래 녹나무가 자라던 토양을 최대한 유지하며 여과를 거쳐 생명정과 잘 혼합하여 시행할 것 2) 허가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관계전문가를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 3) 이식 전·중·후에 대한 일체 기록을 약식형태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단체에 제출할 것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 녹나무 이식 후 최소 6개월 이상 생육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 및 관리단체에 제출할 것 ○ 허가기간 (당초) 2017.5.17.~2019.12.27 (변경) 2017.5.17.~2020.12.27	
	26	지질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진입로 등 시설물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 25호 - 변경 사업내용 : 기간연장 · 당초 : 2019.4.16.-2019.12.31. 변경 : 2019.4.16.-2020.6.30. ○ 허가기간 : 2019.04.16. 부터 2020.06.30.	<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접수 11명